

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

의안 번호	13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의 모법인 환경보전법이 '90. 8. 1 일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
- '92. 7. 1일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로 개편되었으며 '95. 7. 1일 부지사가 행정, 정무부지사로 복수화 개편되었음에 따라 동조례 규정중 설치근거법과 위원장 및 간사의 직위 명칭변경

□ 주요골자

- 제1조 : 환경보전법 제11조→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
- 제3조제2항 : 부지사 →행정부지사
- 제8조제2항 : 환경보호과장 →환경관리과장으로 변경

□ 의안전문 : 별첨

□ 신. 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□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 : 해당없음

□ 입법예고결과 : 해당없음

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중 "환경보전법 제11조"를 "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"로 한다

제3조 제2항중 "부지사"를 "행정부지사"로 한다

제8조 제2항중 "환경보호과장"을 "환경관리과장"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